



# 미국의 전자공증제도

- 대면요건을 중심으로 -

- 신청일 : 2013년 6월 10일
- 신청기관 : 법무부 법무과

## I. 서론

미국에서 공증(notary 또는 notary public)이란 주 정부에 의해 공정한 증인으로 공공에 봉사하도록 임명된 자를 말한다. 공증의 주된 목적은 자기인증(self-authenticating)을 하는데 있어,<sup>1)</sup> 문서의 작성된 내용과 서명자의 자발적 의사 등을 추정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미국에서의 공증은 50개 주의 모든 부동산 권리 및 관련서류의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 공증인법에서는 사기적 서명행위(fraudulent signature)를 막기 위해 공증인으로 하여금 공증 시에 면전에서 서명인(signer: 우리나라 공증인법상 “촉탁인”에 해당)을 확인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personal appearance).

최근 미국 버지니아 주는 미국내 최초로 원격공증(remote notarization)을 허용하는 전자공증법(Electronic Notaries Acts of 2011)을 제정하였다. 동법의 원격공증방식은 쌍방향 화상회의(two-way audio-video conferencing: 이하 화상회의라고 함)기술<sup>2)</sup>을 활용한 것으로, 공증을 위해서 서명

1) 58 Am. Jur. 2d Notaries Public 39.

2) HB 2318, <http://leg1.state.va.us>, 실제로 프랑스 공증인이 화상회의를 통한 공증을 하였다. 참고문헌으로 Ugo Bechini and Dominik Gassen, A New Approach to Improving the Interoperability of Electronic Signatures in Cross-Border Legal Transactions, 17 Mich. State J. Int'l L., No. 3, 2009, 4면.

인은 적법절차에 따라 온라인에서 지정공증인(commissioned virginia notary public)과 대면하여야 한다. 동법의 입법 의도는 서명인의 신분증명을 강화하여 공증절차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는 사기적 서명행위를 발견하여 억제시키는 수단인 동시에 글로벌 네트워크 정보사회 속에서도 소비자, 사업자 그리고 정부 사이의 공증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것이다.<sup>3)</sup>

그런데 버지니아 주와 달리 미국의 몇몇의 주<sup>4)</sup>에서는 화상회의를 통한 공증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주들은 공증인의 대면요건은 공증의 효력을 담보하는 요건인 동시에 화상회의를 통해서 공증인이 사기적 서명행위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지니아 법은 원격공증이 급격하게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많은 사람들로 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sup>5)</sup>

본고에서는 미국의 전자공증제도에 있어서 대면요건이 디지털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컴퓨터시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와 미국의 이와 같은 제도 변화가 현행 우리나라의 전자공증제도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보는데 있다.

## II. 미국 공증제도에 있어서 대면요건

### 1. 공증제도

#### 1) 공증행위에 관한 통일법과 모델법

미국 헌법은 공증인법의 제정을 각 주에 맡기고 있어, 공증인제도는 각 주의 개별적 규정을 따른다.<sup>6)</sup> 다만 각 주의 공증인법은 전미통일주법위원회(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 NCCUSL)와 전미공증인협회(National Notary Association: NNA) 등의 양대

3) Timothy Reiniger and Richard Hansberger, Virtual Presence : Online Notarization and the End of Physical Appearance in the Digital Age, 8 No. 2 ABA SciTech Law: 16, 2011, 16면.

4)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네바다, 뉴저지, 오키오, 오클라오마, 오레곤, 북 마리아나 제도, 로드아일랜드 주, 위스콘신 등.

5) Timothy Reiniger and Richard Hansberger, 각주 3, 16면; Tim Reiniger, The Cybernotary Becomes a Reality: First Online Deed in the United States, EDDE journal, vol 5. issue 4, 2013, 23면 이하 참고.

6) 각 주의 공증관련 법률은 연방 법률차원의 법률보다는 통일법 및 모델법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채택해 입법하여 주내의 공증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통일법 내지 모델법 등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각 주는 이를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다.<sup>7)</sup>

1982년 전미통일주법회의에서는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통일인증법(Uniform Acknowledgement Act)과 통일인증인정법(Uniform Recognition of Acknowledgements Act)을 통합하여 공증행위에 관한 통일법(Uniform Law on Notarial Acts of 1982: 이하 통일법이라 함)을 제정하였다. 통일법에서는 다른 종류의 공증행위를 정의하고 주 안팎으로 공증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010년 개정 통일법은 공증인의 책임, 전자기록, 각 주의 인정 및 손해배상 등을 개정하였는데, 지난 30년 동안의 거래환경 및 기술 환경의 변화에 조화되도록 수정하였음을 밝히고 있다.<sup>8)</sup>

한편 1973년 전미공증인협회는 공증법의 기초가 되는 모델공증인법(Model Notary Act: 이하 모델법이라 함)을 발표하였다. 모델법은 사상 최초로 공증행위와 공증인에 대한 주 차원의 규제를 위한 규칙을 확립한 종합적인 모델이며 이후 3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1984년 개정에서는 1973년의 상당부분 개선과 확대를 하였으며, 2002년 개정에서는 가장 종합적이고 상세한 모델법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전자공증에 관한 규칙을 확립하였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지는 개정은 2010년 개정으로 전자공증에 있어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제3장 전자공증(electronic notary)에서는 지난 8년간의 기술, 산업, 정부 상황변화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점은 공증인에게 사기적 서명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그리고 기존의 종이 기반의 제1장 및 제2장의 규정을 전자공증행위에 맞게 일부 수정하고 있다. 그 외 공증인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윤리적 의무 등을 강화하고 있다.<sup>9)</sup>

이후 전미 각 주 국무장관협회는 전미전자공증위원회(National eNotarization Commission)를 설립하여 2006년 전자공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미 전자공증기준안(National Electronic Notarizations Standards: 이하 기준안 이라 함)을 만들었다. 2011년에는 전자공증의 보안과 실시를 위하여 기술 중립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모델 기준을 일부 수정하였다.<sup>10)</sup>

7)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진호, “미국공증제도에 관한 연구”, 「최신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08. 6 참고.

8) 통일법은 아이오아, 다코다, 오레곤, 펜실베이니아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전미통일주법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http://www.uniformlaws.org/Act.aspx?title=Law%20on%20Notarial%20Acts,%20Revised>

9) 모델법은 현재 15개 주에서 전체 또는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특히 버지니아 주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경우 전자공증에 관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전미공증인협회 홈페이지를 참조, [http://cdn.nationalnotary.org/News\\_and\\_Resources/Library/US\\_Jurisdictions\\_%20Adopting\\_Model\\_Notary\\_Act.pdf](http://cdn.nationalnotary.org/News_and_Resources/Library/US_Jurisdictions_%20Adopting_Model_Notary_Act.pdf)

10) NASS Resolution Reaffirming Support for the National Electronic Notarizations Standards, Reaffirmed on July 13. 2011.

## 2) 전자인증과 모델법

공증인법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증”과 관련하여 전자인증에 관한 입법적 발전도 있었다. 1999년에 통일주법위원회에서 채택된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UETA)<sup>11)</sup> 제11조는 서명 또는 기록의 공증, 인증, 검증, 검증을 요구하거나 또는 선서 하에 작성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러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의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2)</sup> 그리고 2000년 미국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국제 및 국내 상거래전자서명법(Electronic Signature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E-Sign Act) 제101조 (유효성에 관한 일반 규정) (g)항은 제정법, 규정 또는 그 밖의 규칙이 서명 또는 기록의 공증, 인증, 검증을 요구하거나 또는 선서 하에서 작성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러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의 전자서명과 해당 제정법, 규정 또는 규칙이 요구하는 정보를 서명 또는 기록에 첨부하거나 논리적으로 연관시키는 경우에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여 상사전자기록의 공증 등과 관련하여 전자서명의 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sup>13)</sup>

이 규정에 따르면 별도의 전자공증사무에 관한 입법이 없더라도 공증인에 의한 전자공증사무 처리가 가능하다. 나아가 미국 법률가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의 정보보호위원회(Information Security Committee)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법적 전문가의 자격을 가진 사람인 ‘사이버공증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국제상거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시도를 한 바 있다. 미국의 전자공증과 관련한 몇몇의 법률에서는 디지털 증명을 이용하면 공증을 원하는 사람이 공증인 앞에 나타나야 한다는 대면의 필요성을 무시하였는데, 이는 전자 비즈니스를 저렴하고 신속하면서도 간이하게 하고자 하는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그 때문에 공증의 안정성, 공고성을 놓치게 된 것

11) 뉴욕 주, 워싱턴 주, 일리노이 주를 제외하고 모든 주에서 수용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전미통일주법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http://www.uniformlaws.org/Act.aspx?title=Electronic%20Transactions%20Act>

12) SECTION 11 NOTARIZATION AND ACKNOWLEDGMENT : If a law requires a signature or record to be notarized, acknowledged, verified, or made under oath, the requirement is satisfied if the electronic signature of the person authorized to perform those acts, together with all other information required to be included by other applicable law, is attached to or logically associated with the signature or record.

13) SECTION 11 (g) NOTARIZATION AND ACKNOWLEDGMENT : If a statute, regulation, or other rule of law requires a signature or record relating to a transaction in or affecting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to be notarized, acknowledged, verified, or made under oath, that requirement is satisfied if the electronic signature of the person authorized to perform those acts, together with all other information required to be included by other applicable statute, regulation, or rule of law, is attached to or logically associated with the signature or record.

은 문제라는 비판이 있다.<sup>14)</sup>

## 2. 공증절차

### 1) 공증인 및 공증범위

일반적으로 미국의 공증인은 주 정부에 의해 공정한 증인으로서 공공에 봉사하도록 임명된 자이다.<sup>15)</sup> 각 주마다 공증인이 되기 위해 각각 다른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체로 법적 소양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개인이 비교적 용이하게 공증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sup>16)</sup>

미국의 공증인에게 부여된 권한은 사법적 또는 최소한의 준사법적 성격을 띤다. 그러나 미국의 공증인은 법률가가 아니므로 유언과 계약 등의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는 없다. 대체로 확실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이 합의서면상의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동일인인지 판단하는 일(인정: acknowledgement), 문서상 당사자로부터 합의서에 서명하였고 그 합의서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선서를 하였다는 확인을 받은 일(선서증언: oaths, 무선서증언: affirmation), 그 문서가 공증된 후에 당사자가 또는 제3자에 의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원본이 변경되었거나 여백에 글씨가 채워지거나 또는 페이지가 첨가 또는 제거되지 못하도록 철저한 보호를 위해 자기의 공식서명에 부가하여 식별기호를 표시하거나 인장을 찍는 일(문서의 인증: Authentication of documents), 자신의 공증행위에 대한 서면기록을 직무기록부에 작성, 비치하는 일에 한정된다.<sup>17)</sup> 즉 공증의 목적은 자기인증을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sup>18)</sup>

2010년 모델법에서는 공증인의 공증권한을 8가지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인정(acknowledgement), 선서증언(oath) 및 무선서증언(affirmation), 선서인증(jurat), 서명증인(signature witnessing), 복사인증(copy certification), 사실진위확인(verification of fact), 전자공증(elec-

14) 전병서, 각국의 공증법제 비교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2008, 42면 이하 참고.

15) <http://www.nationalnotary.org>

16) 개인은 공증인으로 임명되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고, 간단한 테스트를 거치고 신원조회 후 몇 개의 서류형식을 채워 제출하거나 혹은 청렴하다는 것을 보증할 보증을 들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면 충분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상일, “미국 공증제도의 전개과정 -Civil Law Notary의 등장과 관련하여”, 「법학논집」 제9권 제1호(2004. 9).

17) 법무부, “각국의 법무제도”, 「법무자료」 제261집, 2004, 58면.

18) 58 Am. Jur. 2d Notaries Public §39.

tronic notarizations), 기타 주법에서 정한 공증행위 등이다(모델법 5-1).<sup>19)</sup>

## 2) 공증절차에서의 대면요건

### (1) 모델공증인법의 “대면요건”

모델법에서 “공증인 앞의 대면요건(personal appearance)”이란 공증인이 물리적으로 충분히 보고 듣고 대화할 수 있으며, 공증주체들로부터 증명서류를 받을 수 있는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모델법 2-15). 즉 동 조항은 공증인의 공증시에 물리적인 대면을 규범화 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는 공증인이 촉탁인의 본인확인에 필수적인 의무이다.<sup>20)</sup>

공증인이 이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한편 촉탁인에 대한 적절한 인지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은 반드시 촉탁인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어야 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촉탁인의 공증인에 대한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은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본다. 결국 대면요건으로 말미암아, 입법자들은 동법이 서명인과 공증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 전자공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다.<sup>21)</sup>

비록 어떤 주는 공식적으로 공증인과 촉탁인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화상회의를 통한 공증을 인정하고 있어서, 동법이 엄격한 기술 요건이 시장에서 비실용적이라고 치부되어 동법이 폐지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입법자들은 전화 연결장치는 신뢰성 있는 신분확인을 위해서 개선되는 동안에 대면요건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기술발전으로 원격 신분증명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면 현재의 입장을 수정할 것이라고 한다.<sup>22)</sup>

### (2) 공증행위에 관한 통일법의 “대면요건”

공증행위에 대한 통일법에서는 서명을 하거나 진술을 하는 개인은 공증인을 대면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또한 이와 같은 대면요건은 서면에 의한 공증뿐만 아니라 전자공증의 경우에도 적용된다.<sup>23)</sup> 따라서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인정, 사실진위확인, 선서증언, 무선서증언을

19) National Notary Association, The Model Notary Act, 2010. 1. 1, 28면 이하 참고.

20) The Model Notary Act 2-1, 2-2, 2-7, 2-11, and 2-21 참고.

21) National Notary Association, The Model Notary Act, 2010. 1. 1, 11면.

22) National Notary Association, The Model Notary Act, 2010. 1. 1, 11면.

23) <http://www.uniformlaws.org/ActSummary.aspx?title=Law on Notarial Acts, Revised>

하는 경우, 서명증인 등은 반드시 공증인을 대면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sup>24)</sup>

통일법에서 인정하는 공증행위 시스템에 의존하여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이 시스템의 완전성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촉탁인은 물리적 출석으로 공증인과 대면하여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고(통일법 section 7), 다음으로 촉탁인이 기록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의 서명이 자발적이고 인식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통일법 section 8(a)).<sup>25)</sup>

이때 대면요건은 비록 영상이 실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비디오 기술에 의한 “대면(appearance)”를 포함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전화와 같은 음성기술에 의한 대면도 포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법이 입안될 때 이러한 기술적 기초한 대면은 공증인에게 촉탁인의 신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촉탁인이 기록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그의 서명이 자발적이고 인식적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sup>26)</sup>

### (3) 전미전자공증기준의 “대면요건”

전미전자공증위원회는 2006년 기준안의 대면요건을 물리적 대면요건으로 정의하면서, 공증인은 비록 전자공증행위를 하더라도 반드시 공증 시에 촉탁인이 출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촉탁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전자공증이라고 하더라도 서면에 의한 방식과 동일하다고 한다. 이는 촉탁인(서명자)이 물리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전자서명 또는 전자인증절차 등에 근거하여 본인확인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7)</sup>

이후 전자공증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련의 원칙을 2010년 6월 24일에 채택하였는데, 전자공증을 서면 기반의 공증에서의 신뢰성 수준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하여,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한 기준과 절차를 채택할 것을 명령하였다.<sup>28)</sup> 때문에 전자공증에 있어서도 기존의 물리적인 대면요건을 여전히 유효하다.

24) *Vancura v. Katris*, 907 N.E.2d 814, 391 Ill. App. 3d 350 (2009).

25)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Revised Uniform Law on Notarial Acts, 2010. 11. 15, 15면.

26)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Revised Uniform Law on Notarial Acts, 2010. 11. 15, 15면.

27) National E-notarization Commission, National Association of Secretaries of State National E-Notarization Standards, 2006.

28) [http://www.nass.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46%3Ae-notarization&catid=34%3Aenotarization&Itemid=398](http://www.nass.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46%3Ae-notarization&catid=34%3Aenotarization&Itemid=398)

### 3. 공증절차상 대면요건에 관한 논의

#### 1) 대리인의 출석

쌍방향 화상 비디오 회의기술이 도입되기 이전에 서명과 전통적인 서면 공증행위에 관한 보통법은 대면요건에 대하여 유연한 접근을 하였는데, 서명자의 대리인 출석을 선례로 하고 있었다. 보통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의 법률 고문은 “보통법은 어떤 이가 자신의 손으로 서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으로도 사인을 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문서에 사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본인이 배석한 자리에서 그럴 수 있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본인의 문서가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하여 서명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서명되더라도 본인이 서명한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sup>29)</sup> 이와 같은 논의는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직접 사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해 사인할 제3자 또는 “자동 펜(auto pen)”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통법에서의 서명의 원칙은 서명자의 대면출석을 요건으로 하지 않았고, 때문에 전자적 대리인 또는 전자적 서명자의 대면 등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보통법상의 대리이론은 공증제도 이전에 부재시 서명을 위한 “증인제출(subscribing witness)”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였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법률에서는 공증된 서류에 의하여 구속된다는 원칙에 대면요건은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대신에 “증인제출”이라는 대리인을 내세워야 했는데, 그는 원칙적으로 서류에 대한 서명이 진실로 입증되었다는 것을 공증인 앞에서 선서해야 했다. 이러한 “실행의 증명(proof of execution)”은 다른 주에서도 그러하였는데, 미국통일법위원회(Uniform Law Commission’s Revised Uniform Law on Natarial Acts)는 공증인법에서 부재원칙(absent principal)과 관련하여 “대리능력(representative capacity)”을 인정하였다.

#### 2) 물리적 대면요건의 한계

한편 보통법과 증인제출(subscribing witness)은 “출석”을 법률상 유동적인 조항이라고 하였다. 그러한 대리 원칙은 한 사람이 오늘날 세계적 기입과 같이 복잡한 조직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없

29) Howard C. Nielson, Jr., Whether the President May Sign a Bill by Directing That His Signature BE Affixed to It, Memorandum Opinion for the Counsel to the President, 2005. 6. 7.

는 상업적 유연성과 현실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회사의 대리인이 계약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는 동시에 수많은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대면요건은 동일한 원칙을 공증인 앞에 자신의 출현을 온라인 화상 회의 기술과 동일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법률은 공증법을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대리이론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사기적인 공증 거래 문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규정되었다. 공증인의 인장과 서류상의 서명은 손쉽게 스캔되고, 전자적으로 대량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문서의 서명자들 중의 한명은 사기적 행위를 명백하게 입증할 증인이 되어야 한다. 게다가 공증인의 문지른 스탬프 인장의 효력은 독립적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검증될 수 없기 때문에(현재 공증인 위원회가 번복, 의심, 폐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증된 서류에 의존하는 당사자들은 법원이 보통법상 사실상의 공증이론으로 문서의 내용을 번복하려는 경우에 공증인의 권위를 증명할 어떠한 방법도 가지지 못한다.<sup>30)</sup>

게다가 현재 과반수에 못 미치는 주들이 공증인으로 하여금 서명자와 증인에 대한 정보를 엄격하게 검증하는 기록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이들 주들은 기록대장을 요건으로 하지만, 공증인의 기록에 대한 과오에 대해서는 책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거짓 ID를 전통적인 공증에게 제시한 서명자는 형사적 제재의 두려움을 거의 가지지 않고 할 수 있다. 즉 전통적인 공증의 경우에도 어떤 이가 문서를 사기적으로 공증하는 등으로부터 보호가 없다면 서명자와 관련한 당사자는 무방비 상태로 놓인다는 점을 지적한다. 공증인이 날인하고 사인을 함으로서 범죄자가 손쉽게 재산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후 법 집행으로 범죄 증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증인의 저널 기록을 찾을 때, 저널 기록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저널기록은 많은 주에서 자발적이고, 엄격한 기록관리와 주 법상의 요건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이다.<sup>31)</sup>

1990년 후반에 어떤 전문적 공증 주석자들은 물리적인 대면을 주장하는 공증인들이 19세기 방법으로 20세기의 거래를 다루는 것에 대하여 개탄한 적이 있다. 공증인법에서는 실제 대면요건에 대하여, 주석자들은 과학기술은 서명자와 공증인의 실시간 화상대화를 포함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찰스 페버(Charles Faerber) 전미 공증인 협회 공증 부대표는 “공증인의 부재한 서명자와 음성교환과 서명자의 비디오 이미지의 실시간 영상은 원거리 전자 공증을 위한 전제조건

30) Richard Hansberger, *Thomas v. Gastroenterology Associates Reminds Notaries That Courts Will Not Help Professionalize Notaries*, 21 *Glendale L. Rev.*, 1-2, 2008.

31) Timothy Reiniger and Richard Hansberger, 각주 3, 19면.



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다.<sup>32)</sup>

### III. 미국 전자공증제도에 있어서 “대면요건”의 변화

미국의 공증제도는 공증인의 자격문제로 인하여 매우 제한적인 공증행위만을 할 수 있지만, 그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공증행위의 신뢰를 더하고 있다. 공증행위에 있어서 서명자의 출석요건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모든 주에서 서명자가 물리적으로 공증인 앞에 나타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증은 서명자를 증명하고 서명자가 물리적으로 특정의 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보증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물리적 대면요건은 사기적 서명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물리적 대면(physical presence)으로 제한된 서명자의 공증인 앞의 출석(personal appearance) 요건이 사기적 서명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도 이는 공증이 제공할 수 있는 큰 가치는 서명자의 물리적인 대면으로 사기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증인의 인증 및 기록으로 서명자의 신분확인을 증명하는데 있다. 실제로 공증인의 기록은 서명자의 신분확인에 매우 중요하며, 서명자를 사칭하거나 사기적 거래를 저지른 범죄행위를 기소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된다.<sup>33)</sup>

버지니아 2011년 공증인법에서는 서명자와 공증인 사이의 화상회의만으로도 공증효력을 부여하였다. 버지니아 입법자는 합법적인 공증인과 서명자가 온라인으로 실제로 대면하여 화상회의 기술을 통해 대화할 수 있다면, 동법은 전통적인 펜과 잉크 공증과 기능적으로 동등하다고 보았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대면요건”요건의 인식변화에 기인한다.

#### 1. 정보통신기술발전과 “대면요건”의 변화

##### 1) 전자서명기술의 제도화

UETA와 연방 E-sign법도 전자적인 거래와 기록은 종이 상대방과 기능적으로 동일하며, 명시적

32) Charles Faerber, Being There : The Importance of Physical Presence to the Notary, 31 J. Marshall L. Rev. 3, 1998, 775면.

33) Timothy Reiniger and Richard Hansberger, 각주 3, 16~17면.

으로 공증인의 전자공증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전자적 공증 행위는 서명자의 신분증명 요건을 대폭 강화시키고 있고, 모든 전자공증인들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증 저널 기록(비록 공증행위의 디지털 기록 포함)을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 2) 사법절차에 있어서 화상회의기술 활용

많은 주 법에 규정하고 있는 비디오 회의 기술 등은 많은 형사사건<sup>34)</sup> 및 민사사건<sup>35)</sup> 등에서 이미 믿을 만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sup>36)</sup> 버지니아에서는 대면실에서 쌍방향 화상 회의를 규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불법적인 도청으로부터 안전한 실시간 신호를 통해서 당사자가 항상 볼 수 있어야 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sup>37)</sup> 이후 모든 대화와 진행은 실제 대면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2. 버지니아 주법상 원격 공증

버지니아의 전자공증법(2011년)은 클라우드 기반의 저장시스템, 전자문서 그리고 서명자가 이 전보다는 쉽게 공증을 할 수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다. 버지니아 밖에 위치한 서명자는 공증인으로부터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더라도 손쉽게 이해 및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버지니아 공증인을 대면할 수 있다.

원격 공증의 경우, 서명자는 공증시점에 물리적인 대면을 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서명자와 공증인은 온라인 화상대화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결을 위해서, 서명자와 공증인은 카메라가 부착되고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장치를 통해서 서로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집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전자공증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34) Va. Code Ann. 19.2-187.1 (B2).

35) Va. Code Ann. 19.2-3.1 (A).

36) State Court Video Conferencing Survey for 2010 and Related Charts(<http://www.ncsc.org>), Elaine Pittman, Virtual Justice, Government Technology, 2011. 1. 10, 34~35면 참고.

37) Va. Code Ann. 19.2-3.1 (B), Va. Code Ann. 47.1-13 (D).

### 1) 공증일자 고지

오늘날 대체적인 상관례상 대부업자가 공증인에 대하여 공증가능일에 대하여 고지하고 화상회의 일정을 잡은 후, 대출인에게 공증인과 화상회의로 만날 일시를 특정하여 메일을 보낸다. 이 경우 대부분의 회사는 공증인과 대출인에게 보안이 가능한 온라인 서명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위해서 암호화 된 통신방법과 서버를 사용하는 온라인 서명 시스템을 제공한다.<sup>38)</sup>

### 2) 온라인 접속과 전자서명

전형적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부업자와 대출인은 2~3 문서에 서명을 해야 하고 공증도 받아야 한다. 대부업자는 서명을 받고 공증을 받기 위한 문서를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 하고, 대출자와 공증인은 로그인하여 그들 각각의 컴퓨터를 통해 문서를 동시에 확인한다. 대출자는 문서에 전자서명을 해야 하는데, “서명”이라는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같음한다. 더불어 대출자는 자신의 육성으로 그의 사인의사를 공증인에게 고지한다.

그러면 공증인은 이에 대응하여 “공증함”이라는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사인을 한다. 공증인이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 공증인 위원회 정보와 공증인의 이름, 갱신기간, 위원회 번호 등이 공증인의 전자서명과 더불어 첨부된다. 공증인과 대출인의 전자서명은 “스크립트 폰트”로서 나타난다.

대출인의 서명과 공증인의 서명 그리고 위원회의 정보는 반드시 무결성(tamper-evident)을 보증하는 기술이 사용된 전자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공증이후에 문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문서를 열람하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무결성 기술은 문서의 부정한 변경을 예방한다.

### 3) 공증인의 서명자 확인

전통적인 공증에서는 공증인이 서명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서명자의 신분을 확인하였다. 물론 공증인은 신분증이 위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원격전자서명이 전통적인 방법

38) Gene Marks, Thanks You Adobe, My Bank Account Will Soon Be Grateful, July 25, 2011, available at <http://blogs.forbes.com/quickerbettertech/2011/07/25/>

에 비하여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사기와 위조를 방지할 수 있으려면, 원격 공증은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서명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공증인이 서명자에 대해 알고 있는 개인정보(personal knowledge)를 활용한 신원확인이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운전면허증, 은행, 로펌 또는 권리관계 증명기관)에 의한 신분증명서를 활용한 방법(antecedent in person proofing)이다.<sup>39)</sup> 셋째, 생체정보(biometric), 정부 기관이 인증하는 높은 수준의 보안 PIV 카드(high-secured PIV card) 또는 비연방 신분 인증자가 제공하는 PIV-1 카드<sup>40)</sup>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인증될 수 있는 서명자의 디지털 서명 등을 통한 신원확인 방법이다.

처음부터 채용된 보편적인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는 고전적인 신분증명은 반드시 연방 PKI 관리 인증자가 정의하는 높은 신뢰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sup>41)</sup> 특히 두 번째 및 세 번째의 방법들은 서명자가 오늘날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군인 또는 연방 정부 공무원 등은 반드시 정부 신분증명 카드(government identification card)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명자의 신분은 이러한 새로운 요건에 의하여 실제로 검증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원격 공증은 공증자로 하여금 서명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문서보다도 손쉽게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 4) 공증기록의 저장

버지니아주 법은 공증인이 전자적 공증 저널 기록으로 확인의무를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모든 원격공증을 이용한 거래는 반드시 저널 기록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데, 당해 기록은 서명자와 거래에 관한 중요한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sup>42)</sup> 게다가 모든 전자적 저널 기록은 반드시 서명자와 공증인 사이의 화상 회의에 관한 모든 기록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비록 공증인(또는 저널 기록에 의존하는 당사자)은 영구적으로 보관할지라도, 전자적 공증법상 전자기록은 반드시 적어도 거래 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39) FPKIPA-CPWG Antecedent, In-person Task Group, FBCA supplementary antecedent, In Person Definition, July 16, 2009, [http://www.idmanagement.gov/fpkipa/document/FBCA\\_Supplementary\\_antecedent.pdf](http://www.idmanagement.gov/fpkipa/document/FBCA_Supplementary_antecedent.pdf)

40) Federal CIO Council, Personal Identify Verification(PIV) Interoperability for Non-Federal Issuers, v.1.0.0, 2009. 5, [http://www.idmanagement.gov/document/PIV\\_IO\\_NonFed\\_Issuers\\_May2009.pdf](http://www.idmanagement.gov/document/PIV_IO_NonFed_Issuers_May2009.pdf)

41) 예를 들어 서명자는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신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응답을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FBCA Supplementary Antecedent, In Person Definition의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42) Va. Code Ann. 47.1-14C.

### 3. 대면요건의 변화 : 사실상 대면요건

클라우드 컴퓨터 시스템의 원격지원 서비스와 저장공간은 법적 개념으로서 “출석”요건을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디지털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더 이상 서명자와 문서 사이의 지리적인 구속을 기반을 둔 물리적 연결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문서가 특정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증인 앞에서 서명자가 물리적인 출석을 해야 한다는 논리적 요건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자들이 전자적으로 공증을 받은 문서의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출석”요건이 강조되었다.

산업계와 정부가 클라우드 컴퓨터 시스템 플랫폼으로 점차 이동하면서, 문서의 내용이 매체보다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온라인 공증은 서명자의 사실상 인식할 수 있는 “출석”을 가능하게 하였고,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여야 할 자들로 하여금 자기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정문서가 특정인에게 귀속한다는 것을 법적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격 공증은 기능적으로 전통적인 펜과 잉크 공증과 동일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클라우드에서 정보 자산의 전략적 관리는 인증력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기초적 증거사실의 요건에 기초가 된다. 왜냐하면 디지털 데이터의 임시적 성격 및 무한 복제 및 산재 가능성 그리고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도처의 통신망 등으로 인하여, 인증된 디지털 기록과 위증물 사이의 구분이 증거서류들의 쟁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이버공증(cybernotaries)”에 대한 ABA 위원회의 수년간 토론으로, 공증법상의 “사실상의 출석(virtual appearance)”을 인정하고 있다.<sup>43)</sup>

따라서 공증행위와 공공인증에 대한 상호승인을 규율하는 주법 때문에, 비록 공증행위의 상호인증에 관한 연방법이 없어도, 모든 주 들은 공공 목적의 기록물, 다른 주 공증 공무원에 의한 공증증서(notarial certificates) 등을 받아들이고 있다. 게다가 공증인이 “공무원(public officers)”이기 때문에, 사실상 출석으로 버지니아 주에서 작성된 공증 서류는 미국헌법상 신의칙 조항(Full Faith and Credit Clause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에 따라 별도의 공증인의 신분 및 공무원 지위를 증명하는 외적인 증거 확인 없이도 다른 주에서도 인증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면서,<sup>44)</sup> 만일 버지니아 온라인 공증을 부정하는 것은 상행위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추어지는 경우 이는 사문

43) DIGITAL SIGNATURE GUIDELINES 1.6.3, 1996, Michael L. Closten and R. Jason Richards, Notaries Public - Lost in Space, 15 J. Marshall J. Comp. & Info. Law, vol 4, 1997, 739-741, Michael L. Closten, The Public Official Role of the Notary, 30 J. Marshall L. Rev. 1998, 655-675. 등 참고.

44) 다른 주 들은 이를 금지할 수 있거나, 다른 주에서 물리적으로 있었던 서명자가 행한 버지니아 온라인 공증을 달리 규율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화된 상행위 조항이 생점화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sup>45)</sup>

#### IV. 마치면서

지금까지 미국의 공증제도에 있어서 대면요건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특히 전자공증에 있어서 대면요건은 원격공증의 필요성과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물리적 대면”에서 “실질적 대면”으로 변화하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국 공증제도에 있어서 대면요건은 사기적인 공증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서 공증의 효력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였음에 틀림없다. 다만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본인 증명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물리적 대면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인가는 논리적 극복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버지니아주 공증인법에서 화상회의를 통한 사실상 대면을 제도화 한 부분은 “대면요건”의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전자인증기술과 더불어 개인정보를 활용한 인증 체계가 고도화 될수록 물리적 대면은 더 이상 사기적 서명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단계가 보기 어려울 것이며, 그러한 공증환경에서는 “대면요건”의 해석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9년 2월 공증인법을 개정하여 전자공증제도를 도입, 공증제도를 선진화 하였다. 현행 전자공증시스템은 인터넷회원 가입 후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 하고 온라인을 공증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후 지정 공증인으로부터 방문일자를 이메일로 안내받아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대면하여야만 전자문서 등에 인증을 부여받게 된다(공증인법 제57조, 제57조의2, 제63조, 제66조의5 참고). 최근 미국에서의 “대면요건”에 관한 논의는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공증인법상 “대면요건”을 반드시 물리적 대면으로 해석 적용하여 앞으로 보다 편리한 전자공증절차를 고안하는데 한계를 둘 것이 아니라, 공증행위의 종류와 과학기술에 근거한 사기적 서명행위의 예방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면요건”의 해석 적용의 가능성을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

45) Timothy Reiniger and Richard Hansberger, 각주 3, 21면.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김상일, “미국 공증제도의 전개과정 -Civil Law Notary의 등장과 관련하여”, 「법학논집」 제9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연구소, 2004. 9.
- 법무부, “각국의 법무제도”, 「법무자료」 제261집, 2004.
- 유진호, “미국공증제도에 관한 연구”, 「최신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08. 6.
- 전병서, 각국의 공증법제 비교연구, 2008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2008.

### 〈외국문헌〉

- Charles Faerber, Being There : The Importance of Physical Presence to the Notary, 31 J. Marshall L. Rev. 3, 1998.
- Elaine Pittman, Virtual Justice, Government Technology, 2011. 1. 10.
- Federal CIO Council, Personal Identify Verification(PIV) Interoperability for Non-Federal Issuers, v.1.0.0, 2009. 5.
- FPKIPA-CPWG Antecedent, In-person Task Group, FBCA supplementary antecedent, In Person Definition, July 16, 2009.
- Gene Marks, Thanks You Adobe, My Bank Account Will Soon Be Grateful, July 25, 2011.
- Howard C. Nielson, Jr., Whether the President May Sign a Bill by Directing That His Signature BE Affixed to It, Memorandum Opinion for the Counsel to the President, 2005. 6. 7.
- Michael L. Closten and R. Jason Richards, Notaries Public - Lost in Space, 15 J. Marshall J. Comp. & Info. Law, vol 4, 1997.
- Michael L. Closten, The Public Official Role of the Notary, 30 J. Marshall L. Rev. 1998.
- Richard Hansberger, Thomas v. Gastroenterology Associates Reminds Notaries That Courts Will Not Help Professionalize Notaries, 21 Glendale L. Rev., 1-2, 2008.
- Tim Reiniger, The Cybernotary Becomes a Reality: First Online Deed in the United States, EDDE journal, vol 5. issue 4, 2013.
- Timothy Reiniger and Richard Hansberger, Virtual Presence : Online Notarization and the End of Physical Appearance in the Digital Age, 8 No. 2 ABA SciTech Law. 16, 2011.
- Ugo Bechini and Dominik Gassen, A New Approach to Improving the Interoperability of Electronic Signatures in Cross-Border Legal Transactions, 17 Mich. State J. Int'l L., No. 3, 2009.
- NASS Resolution Reaffirming Support for the National Electronic Notarizations Standards, Reaffirmed on July 13. 2011.
-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Revised Uniform Law on Notarial Acts, 2010. 11.
- National E-notarization Commission, National Association of Secretaries of State National E-Notarization Standards, 2006.
- National Notary Association, The Model Notary Act, 2010. 1.